

#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12월 14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12월 14일

3.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취득, 처분, 무상사용

【 재산의 취득 】

- 충청북도여성회관 청사신축
  - . 청주시 지북동 355-18 번지 3,305㎡
- 농촌진흥원 청사신축
  - .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277-1번지(본관동및 연구동) 10,248㎡
-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
  - .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12번지(본관동및부속건물) 4,629㎡
- 청주소방서가경파출소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 . 부지매입
    - 청주시 가경동 1078번지(대지) 655.9㎡
  - . 위 청사신축 495㎡
- 제천소방서매포파출소 청사신축
  - .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69번지 495㎡

【 재산의 처분 】

- 잠업검사소 재산매각
  - . 청주시 방서동 100번지의외 30필지 79,046㎡
- 산림환경연구소 재산매각
  - . 청주시 용암동 282-5번지의외 57필지 98,067㎡
- 임목매각
  - . 제천군 백운면 방학리산 124-1번지의외 7필지 5,358㎡

[ 재산의무상사용 ]

○ 국립공원관리공단 숙리산관리사무소

- .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3-2외 5필지(토지) 14,192m<sup>2</sup>
- .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5외 12필지(건물26동) 1,330.50m<sup>2</sup>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관리사무소

-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693-1외 5필지(건물6동) 675.36m<sup>2</sup>

## 5. 검토보고

충청북도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가. 취득재산에 있어

- 여성회관 청사 신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시대적흐름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로 개축의 필요성이 절실한바

외청,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하는 것이나

- 농촌진흥원 청사 신축은

공단 및 주택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각종 공해의 영향으로 작물시험연구가 부적합하고 시험포 면적이 협소하여 외청,사업소 이전계획에 의거 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하는 것임.

- 산림환경연구소 청사 신축은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시험연구사업이 부적합한바, 외곽지로 이전하여 우수한 시험림을 생산하고 수복원의 조성으로 독립가 육성과 임업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 청주소방서 가경파출소 부지 매입 및 청사신축과 제천소방서 매폐파출소 청사 신축은

'95년도 소방관서 설치 승인에 따라 가경파출소와 매폐파출소 청사를 신축 광역소방체제 조기정착으로 화재예방과 진압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임.

나.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 잠업검사소 재산 매각은

인근지역 도시화 추세에 따른 공해발생증가로 시험연구사업이 어려울뿐 아니라 부지일부가 용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이전계획에 의거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산림환경연구소 재산 매각은

청원군 비원면 비원리로의 이전계획에 따라 현 용암동 위치의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이며

- 임목 매각은

도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중인 도유림 및 국유림내의 「성림」 「밀생」 「불량임목」을 영림계획에 의거 5,358㎡에 대해 벌채 매각코자 하는 것임.

다. 재산의 무상 사용에 있어서는

- 속리산 및 월악산 국립공원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94.12.31일로 만료 되는바 이에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립공원관리 업무는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내 도유재산의 대부분이 야영장과 화장실로 도에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인바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96.5.31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들 취득,처분,무상사용 재산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서 본 계획을 승인하여 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첨 부

- .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